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72

발의연월일: 2022. 10. 11.

발 의 자:류성걸・김예지・김용판

김학용 · 김상훈 · 박대출

배준영 · 안병길 · 이명수

임병헌 · 정운천 · 주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주요내용

- 가.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대상 저축에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함(안 제 89조의2).
- 나.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제91조의22).

- 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이 제한되는 금융상품 관련 특례 에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함(제129조의2).
- 라.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감면 세액이 추징되는 금융상품 관련 특례에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추가함(제146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 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

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 가.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계좌 운용· 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을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제출 등) ①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	
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	
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	
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	
축성보험의 보험금・공제금・	
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	
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 · 인출금	
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	
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	
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	
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	
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	
시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 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 91조의14부터 제91조의21까 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사회 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 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 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 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 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 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 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 글
 - 2.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1
<u>제</u> 91조의22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
축,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
약계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

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 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 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 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 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 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 를 말한다.
-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u>것</u>
-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 가.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상품

 -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

 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

 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

 사채
 -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 <u>마. 「소득세법」 제88조제3</u> <u>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u> <u>의 주식</u>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 하일 것
-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따라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 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 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 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계좌 운용·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 저 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 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 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 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 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 득세법 _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 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 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② (생략)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 제146조의2(이 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 자소득 비과 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 정) ① ---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
세특례의 제한) ①	
제91조의22	
②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	투
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

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 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 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 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 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 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 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 의19 및 제91조의21에 따른 이 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 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 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 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 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 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 하다.

② ~ ⑤ (생 략)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
 ② ~ ⑤ (현행과 같음)